

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

등록번호 : 제 3-01-25-0037 호

상호 또는 명칭 : (주)아이뱅크

성명(대표자) : 정용관

생년월일 : 1967년 08월 01일

주소(주된 사무소의 소재지) : (07790)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66,
보타닉게이트 10층 (마곡동)

자본금 : 500,000,000 원

제공역무 :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

홈페이지 : <https://solution.ibank.co.kr/>

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 및 설치 장소

CRM솔루션 구축 서비스로 발인사의 솔루션 설치설비와 인터넷 발송문자 상위 사업자인
인포립을 사용

AWS 서울 리전 활용 (ap-northeast-2)

웹서버 1대, DB 서버 1대, ELCAP Firewall (방화벽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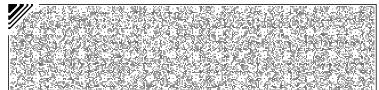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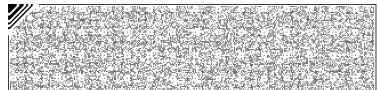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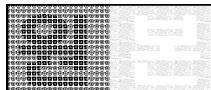
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31, 센터필드이스트타워 12층 (역삼동)

최초등록일 : 2025년 05월 15일

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
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하였습니다.

2025년 05월 15일

서울전파관리소장



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준수사항 안내

□ 특수한 유형(웹하드, 기업메시징)의 부가통신사업 등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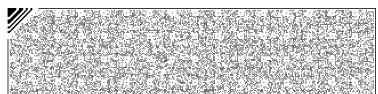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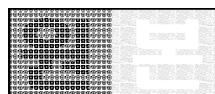
-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,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함(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2항, 제5항)
- 등록 없이 사업을 경영한 자는 시정명령,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(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1항 및 제95조제3의2호),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취소(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제1항)
-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상시 준수하여야 하며, 등록기관의 등록요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자료 요구 시 성실히 응하여야 함

□ 특수한 유형(웹하드, 기업메시징)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 등

-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상호 · 명칭 · 주소, 대표자, 제공 역무의 종류(사이트 추가, 폐지 등),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의 양도 · 양수, 합병 · 상속이 있을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거나 신고하여야 함(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, 제24조)
 - 양도 · 양수의 경우 양수인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
- 양도 · 양수, 합병 · 상속 신고 없이 사업을 경영한 자는 시정명령,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(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1호 및 제97조제4호)

□ 특수한 유형(웹하드, 기업메시징)의 부가통신사업 휴업 · 폐업

-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,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지역 전파관리소에 신고하여야 함(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제1항)



□ 특수한 유형(기업메시징)의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신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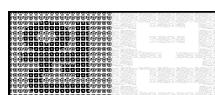
- 전기통신사업자는 특수한 유형(기업메시징)의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서비스의 요금을 신고하여야 함(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4제1항)
- 신고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시정명령 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(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1항 및 제98조제1호)

□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, 이를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(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2)
- 관련법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, 시정명령 미이행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(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1항, 제104조제5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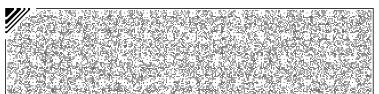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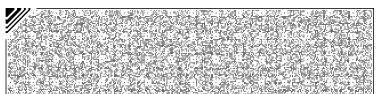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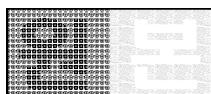
□ 통신비밀자료 제공현황 보고 및 관련 자료 비치

-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에 통신비밀자료를 제공한 경우, 제공 요청서 및 제공대장 등을 1년간(통신자료) · 3년간(통신제한조치) · 7년간(통신사실확인자료) 비치하여야 하고, 제공현황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(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5항, 제6항,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2항, 제3항, 제13조제7항)
- 관련법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(통신자료),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(통신사실확인자료),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(통신제한조치)(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1항, 제104조제5항,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제1항, 제2항)
-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통신자료제공대장을 연 2회 보고하여야 함(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7항)
- 관련법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(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제5항)



□ 등록 · 신고 · 보고 방법 안내

구 분	방 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, 변경, 휴업 폐업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과기정통부 전자민원센터(www.emsit.go.kr) 또는 지역 전파관리소에 우편·팩스 및 방문접수 <table border="1"><thead><tr><th>기관명</th><th>관할지역</th><th>소재지</th><th>전화번호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서울지소</td><td>서울, 인천, 경기</td><td>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-43</td><td>02-2680-1755</td></tr><tr><td>부산지소</td><td>부산, 경남</td><td>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-17</td><td>051-974-5117</td></tr><tr><td>광주지소</td><td>전남, 광주</td><td>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-24</td><td>061-330-6811</td></tr><tr><td>강릉지소</td><td>강원</td><td>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-31</td><td>033-660-2817</td></tr><tr><td>대전지소</td><td>충남, 대전, 세종</td><td>대전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</td><td>042-520-4136</td></tr><tr><td>대구지소</td><td>경북, 대구</td><td>대구시 수성구 동원로 90</td><td>053-749-2817</td></tr><tr><td>전주지소</td><td>전북</td><td>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</td><td>063-260-0104</td></tr><tr><td>울산지소</td><td>울산</td><td>울산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-6</td><td>052-231-8883</td></tr><tr><td>청주지소</td><td>충북</td><td>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</td><td>043-261-5855</td></tr><tr><td>제주지소</td><td>제주</td><td>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</td><td>064-740-2819</td></tr></tbody></table>	기관명	관할지역	소재지	전화번호	서울지소	서울, 인천, 경기	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-43	02-2680-1755	부산지소	부산, 경남	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-17	051-974-5117	광주지소	전남, 광주	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-24	061-330-6811	강릉지소	강원	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-31	033-660-2817	대전지소	충남, 대전, 세종	대전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	042-520-4136	대구지소	경북, 대구	대구시 수성구 동원로 90	053-749-2817	전주지소	전북	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	063-260-0104	울산지소	울산	울산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-6	052-231-8883	청주지소	충북	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	043-261-5855	제주지소	제주	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	064-740-2819
기관명	관할지역	소재지	전화번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지소	서울, 인천, 경기	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-43	02-2680-175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부산지소	부산, 경남	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-17	051-974-511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광주지소	전남, 광주	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-24	061-330-681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강릉지소	강원	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-31	033-660-281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전지소	충남, 대전, 세종	대전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	042-520-413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구지소	경북, 대구	대구시 수성구 동원로 90	053-749-281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주지소	전북	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	063-260-010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울산지소	울산	울산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-6	052-231-888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청주지소	충북	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	043-261-585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주지소	제주	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	064-740-281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부가통신서비스 요금신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(044-202-6664)에 신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팀(044-202-6632)에서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통신비밀자료 제공현황 보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13, 14호(통신자료) 및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서식 제2, 14, 15, 16(통신사실확인자료, 통신제한조치)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(tongbi@korea.kr, 044-202-6664)에 보고○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15호를 작성하여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

정보보호최고책임자(CISO) 지정 · 신고제도 안내

□ 정보보호최고책임자(CISO) 지정 · 신고 등(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)

-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임직원을 CISO로 지정 · 신고하여야 함
 - * CISO(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)
 - 다만, 자본금 1억원 이하 또는 소기업 또는 중기업으로서 전기통신사업자,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 의무대상자, 개인정보처리자,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는 신고의무 제외대상임
- 신고의무가 발생하게 된 날부터 18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(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)

□ 정보보호최고책임자(CISO) 겸직금지

-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자는 CISO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고, 상근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추가로 갖추어야 함
 -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
 -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5년 이상(정보보호 분야 업무 수행 2년 이상)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

< 정보보호최고책임자(CISO) 자격요건>

-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
-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법 제47조제6항제5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-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속인 정보보호 관련 업무 부서의 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
□ 신고방법

- 과기정통부 전자민원센터(www.emsit.go.kr) 또는 지역 전파관리소에 우편 · 팩스 및 방문접수

